



법적의무보험 재구조화

Age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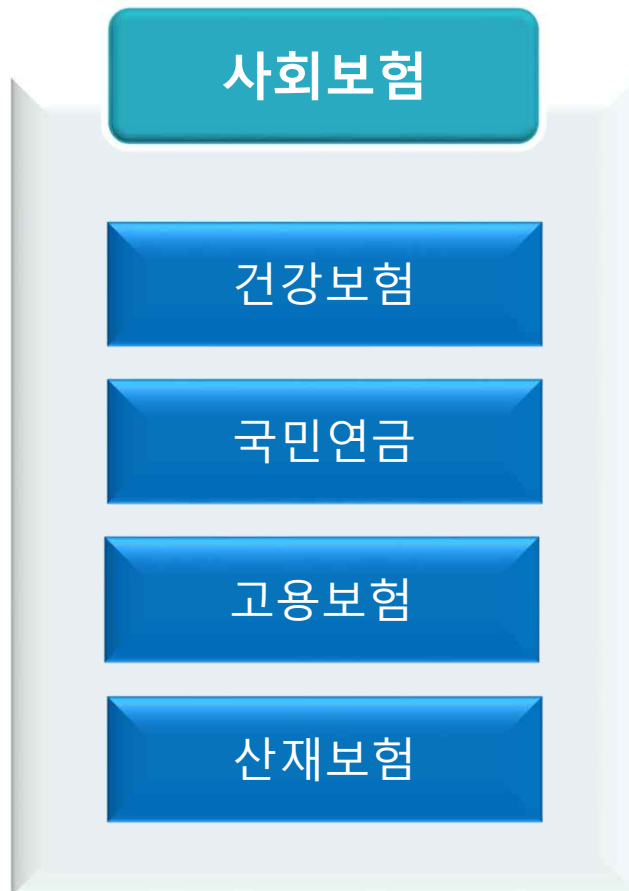
- 국내 주요 재난사고
- 의무보험의 종류
- 의무보험이란 ?
- 의무보험의 현황
- 서울시민안전보험
- 의무보험의 특징 및 재구조화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내 주요 재난사고

	사고 장소	발생일자	사고원인	사망자(명)
1	대연각호텔	71.12.25	화재사고(가스폭발)	163
2	서해훼리호	93.10.10	선박침몰(정원초과, 악천후)	292
3	성수대교	94.10.21	붕괴사고(상판48M)	32
4	아현동 도시가스	94.12.07	가스폭발	12
5	삼풍백화점	95.06.29	붕괴사고(유지관리 부실 등)	502
6	씨랜드 청소년수련의집	99.06.30	화재사고	23
7	인천 인현동 상가	99.10.30	화재사고	56
8	대구지하철	03.02.18	화재사고(방화)	192
9	우면산 산사태	11.07.27	산사태(집중호우)	18
10	경주마우나리조트	14.02.17	붕괴사고(적설)	10
11	세월호	14.04.16	선박침몰(과적, 불법증축 등)	299
12	밀양 세종병원	18.01.26	화재사고	45
13	이천물류창고 공사현장	20.04.29	화재사고	38
14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22.10.29	압사사고	159
15	강화도 글램핑장	23.05.25	화재사고	5

의무보험의 종류 ?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상품
(14개 부처 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 보험 운영)

- | | |
|-------------------------|--------------------|
| ① 1973년 / 대연각 화재사고 | → 특수건물 화재보험 도입 |
| ② 1993년 /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도입 |
| ③ 1994년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입 |
| ④ 1999년 / 씨랜드 화재사고 | → 청소년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도입 |
| ⑤ 2009년 /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고 | →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도입 |
| ⑥ 2015년 / 강화도 캠핑장 화재 | → 야영장배상책임보험 도입 |

(재난안전)의무보험 현황 ①



(단위 : 억원)

	의무보험	근거법률	주무부처	법률상 보상한도액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	관광사업자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문체부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2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			1.0	무한	1.0
3	운전학원종합보험	도로교통법	경찰청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4	생활체육자배상책임보험	생활체육진흥법	문체부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5	선주배상책임보험	해운법	해수부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6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부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7	어린이집배상책임보험	영유아보육법	보건부	공제규정에 따름		
8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각시도 조례로 규정		
9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 등	산업부	0.8	무한	3~100
10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진흥법	여가부	0.8	무한	

(재난안전)의무보험 현황 ②

(단위 : 억원)

	의무보험	근거법률	주무부처	법률상 보상한도액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1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행안부	0.8	무한	0.02
12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보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경청	1.5	무한	
13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안전관리법	행안부	0.8	무한	0.1
14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보건부	1.0	무한	
15	수렵보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1.0	무한	0.3
16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	금융위	1.5	무한	10.0
17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1.5	무한	10.0
18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부	1.5	무한	0.1
19	낚시터 및 낚시어선배상책임보험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해수부	1.5	무한	
20	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안전법	해경청	1.5	무한	

(재난안전)의무보험 현황 ③

(단위 : 억원)

	의무보험	근거법률	주무부처	법률상 보상한도액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21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안부	1.5	무한	
22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체부	1.5	무한	
23	마리나업자배상책임보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수부	1.5	무한	
24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안부	1.5	무한	
25	항공보험(경량항공기)	항공사업법	국토부	1.5	무한	
26	항공보험(항공사업자)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규정에 따름		
27	궤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궤도운송법	국토부	2.0	2.0	
28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우주손해배상법	과기부	2,000		
29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해수부	451만SDR(5천톤 이하) - 약 70억원 / 8,977만SDR(5천톤 이상) - 약 1,400억원		
30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500/1,000/2,000(시설범위에 차등)		

※ SDR (Special Drawing Rights) : IMF의 특별인출권 (1 SDR = 약 US\$1.4)

(전문직업)의무보험 현황 ④

(단위 : 억원)

	업종	의무보험	근거법률	주무부처	법률상 보상한도액
1	회계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공인회계사법	금융위	0.5이상/회계사
2	세무사		세무사법	기재부	0.3/세무사
3	변호사		변호사법	법무부	개인 : 1.0 법인 : 1.0 X 변호사수
3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해수부	1.0/감정평가사
4	관세사		관세사법	행안부	0.1/관세가
5	보험중개사		보험업법	금융위	개인 : 1.0 법인 : 3.0~100
6	주택관리사		주택법	국토부	500세대미만 : 0.3 500세대이상 : 0.5

서울시민안전보험(23년 : 보장내용)



보장항목	내 용	금 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 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Source : 서울시)

의무보험의 특징 및 재구조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고발생에 따라 관련부처별도 개별적으로 도입 · 운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음.

A. 보험 · 공제상품별로 보상한도액 상이

(단위 : 억원)

		보상한도액			
대인배상	인당	0.8	1.0	1.5	2.0
	사고당	무한(Unlimited)			
대물배상	사고당		0.02	0.3	10.0

B. 무과실배상 vs. 과실배상 혼재 운용

- 무과실배상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특수건물), 다중이용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배상(구내치료비특약)
- 과실배상 : 기타 배상책임

C. 가입면제 및 보험금 분담 불명확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 > 재난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시배책)

A. 보험 · 공제상품별로 보상한도액 상이

업 종	의무보험	배상법리	보상한도액		
			대인배상		대물배상
			인당	사고당	사고당
주유소	재난배상책임보험	무과실배상	1.5억원	무한	10억원
LPG충전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과실배상	0.8억원		3억원~50억원
수소충전소			0.8억원		3억원~50억원

B. 무과실배상 vs. 과실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 과실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VS.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무과실배상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C. 가입면제 및 보험금 분담 불명확

			화보법(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법	재난배상책임법
시행시기			73년 02월 06일~	13년 02월 23일~	17년 01월 08일~
담보위험			화재, (주택 : 폭발, 파열)	화재, 폭발	화재, 폭발, 붕괴
해당 업종			APT(16층 이상) 일반건물(11층 이상) 1,000㎡이상(국유시설) 2,000㎡이상(학원, 음식점, 주점, 영화관 등) 3,000㎡이상(공장, 역사, 교육시설, 의료시설, 숙박업소, 백화점, 대규모점포, 공연장 등)	26개 업종 100㎡ ↑ 음식점(1층 제외)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스크린골프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PC방, 비디오방, 사우나 등	20개 재난취약업종 공동주택, APT(15층 이하) 100㎡ ↑ 음식점(1층 포함) 3,000㎡ 이하(숙박업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도서관 등)
손해배상책임법리			무과실배상 / 보험금청구권 압류불가		
벌금 or 과태료			최대 500만원(벌금)	최대 300만원(과태료)	
보험가입주체			건물주	사업주(점유자)	사업주(점유자)
보 상 한 도	대인배상	인당	사망/후유장해(1.5억원/인), 부상(1급 : 3천만원~14급 : 50만원)		
		사고당	무한		
	대물배상	사고당	10억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23.1.27.)

< 범정부 국가 위험분석 및 평가·관리 추진체계(안) >

비전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목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27년 10만명당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0명내 감축*

* '19년 기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OECD 평균 22.1명 / 한국 26.2명

기본방향

「관점」 전환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상시적 재난관리

「방식」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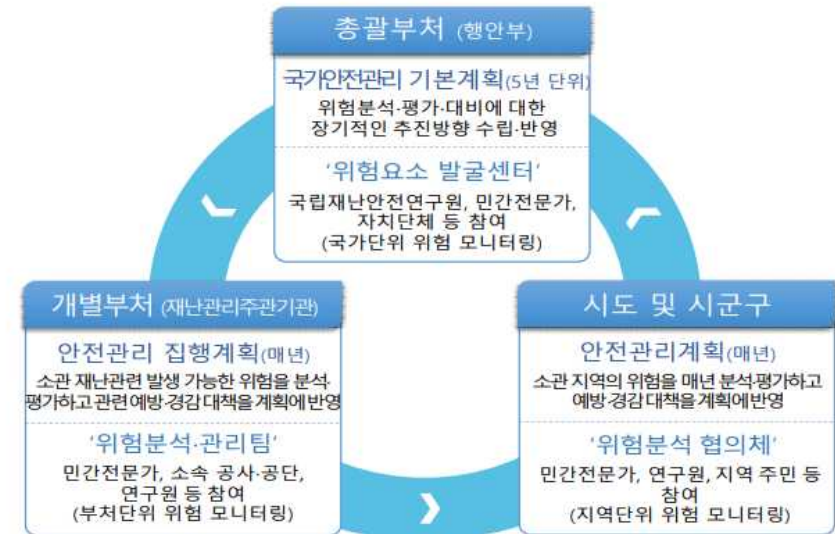
디지털플랫폼·
과학 기술 기반,
全 사회 구성원 참여

「행동(실천)」 전환

온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 확산

**5대
추진전략**

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3.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4.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5.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행안부장관) 위험에 대비한 정책 추진현황 점검 (매년 6월, 10월)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되었던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실행력 확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범정부 위험 분석·평가 회의 (매년 3월, 부처, 시도 참여)

* 부처별 집행계획을 위험분석 대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보고

대통령 주재 범정부 위기 분석·평가·집행 성과 보고대회 (매년 12월)

* 국정과제 보고대회 등과 연계도 검토

- ▶ 범정부적인 위험관리 추진체계 운영에 필요한 총괄부처, 관리팀은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신설(기능 확대), 자치단체는 지역안전관리단을 확대하여 운영
- ▶ 신종재난위험징후 사전예측시스템 개발 병행 추진(재난안전 R&D 사업 연계)